

광주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104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83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866,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920,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1,0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1,272,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각 2023.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022. 10. 1.부터 전남 화순군 B 도로 577㎡, C 도로 452㎡, D 도로 612㎡ 인도시까지 연 1,272,5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선정자 E에게 12,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3.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022. 10. 1.부터 전남 화순군 F 임야 203㎡ 인도시까지 연 157,4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전남 화순군 B 도로 577㎡, C 도로 452㎡, F 임야 203㎡, D 도로 612㎡를 인도하고, 94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973,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1,034,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1,125,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1,430,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022. 10. 1.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연 1,430,02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1996. 6. 27. 전남 화순군 B 도로 577㎡, C 도로 452㎡, D 도로 612㎡ 중 각 1/5지분씩을 취득하였고, G는 1990. 10. 12. F 임야 203㎡를 취득하고 2022. 9. 2. 선정자 E에게 2022. 8. 26.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이하 4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피고는 H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공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 측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이 사건 토지 중 F의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차임은 157,426원이고, 나머지 토지의 2017.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차임은 아래 표와 같다.

	B	C	D	합계
2017.10.1.-2018.9.30.	295,135	231,198	313,038	839,371
2018.10.1.-2019.9.30.	304,656	238,656	323,136	866,448
2019.10.1.-2020.9.30.	323,697	253,572	343,332	920,601
2020.10.1.-2021.9.30.	352,258	275,946	373,626	1,001,830
2021.10.1.-2022.9.30.	447,463	350,526	474,606	1,272,595
	1,723,209	1,349,898	1,827,7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832,472원(839,371원 - 시효로 소멸한 2017. 10. 1.부터 2017. 10. 3.까지 3일분 839,371원 $\times$ 3/365)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866,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920,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1,0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1,272,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각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12.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22. 10. 1.부터 B 도로 577㎡, C 도로 452㎡, D 도로 612㎡ 인도시까지 연 1,272,595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선정자 E에게 F 임야 203㎡에 대한 2022. 9. 2.부터 2022. 9.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2,507원(157,426원 $\times$ 29/365)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 2023. 12.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22. 10. 1.부터 F 임야 203㎡ 인도시까지 연 157,426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토지 인도청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1996년 이래 공로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은 1996년 B 도로 577㎡, C 도로 452㎡, D 도로 612㎡를 취득한 이래 피고의 점유를 수인하여 왔으며, F 임야 203㎡의 경우 선정자 E의 전 소유자인 G가 1990. 10. 12. 취득한 이래 피고의 점유를 수인하여 왔는바,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를 넘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행사하려는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없이 불필요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